

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심사 절차와 방법(제63조제4항 관련)

1. 현장심사

- 가. 공시기관은 공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현장심사 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알리고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심사를 해야 한다.
- 나. 공시심사원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관하에 수행해야 한다.

2. 제품심사

- 공시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와 제1호나목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해 외관검사를 실시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주성분의 정성(定性)·정량(定量)분석을 하거나 유해성분(병원성미생물을 포함한다), 농약성분, 항생물질 등을 분석할 수 있다.

3. 서류심사

- 가. 공시기관은 제62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시의 신청이나 그 갱신의 신청을 위해 제출된 불임의 자료·서류 및 그 밖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해 유기농업자재의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. 다만, 갱신신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- 나. 공시기관은 제출서류 중 독성 시험성적서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다. 공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독성시험성적 심사결과를 수용해야 하며,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.

4. 종합심사

- 가. 공시기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나. 공시기관은 신청인에게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요청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
[붙임]

공시의 신청 및 갱신신청 시 제출 자료 및 서류

제출 자료 및 서류	토양 개량 · 작물 생육	병해충 관리
1. 원료 · 재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	○	○
2. 이화학(미생물검정) 검사성적서 가. 주성분 1) 주성분 검사성적서 및 분석방법 2)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3) 천적 검사성적서 4) 주성분에 대한 성분량 나. 유해성분 1)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2)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3)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4)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5) 리친(Ricin) 검사성적서	 ○ ○ ○ △ ○ ○ ○ ○ △	 ○ ○ ○ △ ○ ○
3.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. 유식물 비료피해[肥害] 시험성적서 나. 비료효과[肥效] · 비료피해 시험성적서 다. 유식물 농약피해[藥害] 시험성적서 라. 농약효과[藥效] · 농약피해 시험성적서	 ○ △ 	 ○ △
4.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. 인축독성시험성적서 나. 환경독성시험성적서	 △ △	 ○ ○
5. 제조공정,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(원료 · 재료 및 제품) 가. 제조공정 나. 품질관리	 ○ ○	 ○ ○
6. 포장지 표기사항에 관한 자료	○	○
7. 시료 500g(ml). 다만,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(ml)로 한다.	○	○
8.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	○	○

○: 신청 시 첨부제출, △: 필요 시 제출